

2022 - 6

(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호(2007.7.12.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71호(2008.3.13.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동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·구역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동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3-76호(2013.10.24.)로 동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4-35호(2014.5.15.)로 동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동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01.12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03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05.11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06.15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08.0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4호(2018.05.3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0호(2018.07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87호(2018.11.29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40호(2020.04.09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04호(2020.07.16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71호(2020.11.19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정정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월 6일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
지 구 명	유 형	위 치	면 적(㎡)	지정목적
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종로구 교남동 62-1 일대	167,859.0	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공간 조성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	계		돈의문 1		돈의문 2		돈의문 3		준치시설(도로)		비고
		면적 (㎡)	구성비 (%)	면적 (㎡)	구성비 (%)	면적 (㎡)	구성비 (%)	면적 (㎡)	구성비 (%)	면적 (㎡)	구성비 (%)	
합 계		167,859.0	100.0	152,198.6	100.0	6,801.4	100.0	8,829.2	100.0	29.8	100.0	
택지 (획지)	계	112,295.6	66.9	100,405.1	65.9	5,510.1	81.0	6,380.4	72.3	-	-	
	주택 용지	95,648.8	57.0	95,648.8	62.8	-	-	-	-	-	-	
	종교 시설	1,671.8	1.0	1,671.8	1.1	-	-	-	-	-	-	
	상업 업무	14,975.0	8.9	3,084.5	2.0	5,510.1	81.0	6,380.4	72.3	-	-	
정비 기 반 사 설 등	소계	47,765.2	28.5	43,995.3	28.9	1,291.3	19.0	2,448.8	27.7	29.8	100.0	
	공원	7,194.5	4.3	6,360.5	4.2	834.0	12.3	-	-	-	-	
	녹지	1,043.0	0.6	1,043.0	0.7	-	-	-	-	-	-	
	도로	26,878.6	16.0	24,061.3	15.8	457.3	6.7	2,330.2	26.4	29.8	100.0	
	철도	(286.5)	-	-	-	-	-	(286.5)	-	-	-	입체적 결정 (면적 산입 제외)
	공공 공지	118.6	0.1	-	-	-	-	118.6	1.3	-	-	
	광장	594.5	0.4	594.5	0.4	-	-	-	-	-	-	
	공공 청사	2,893.5	1.7	2,893.5	1.9	-	-	-	-	-	-	
	문화 시설	9,042.5	5.4	9,042.5	5.9	-	-	-	-	-	-	
준치시설		7,798.2	4.6	7,798.2	5.2	-	-	-	-	-	-	

2)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
3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- 4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없음)
- 5) 교통계획(변경없음)
- 6) 경관계획(변경없음)
- 7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8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(변경없음)
- 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(변경없음)
- 10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- 11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(해당없음)
- 12)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(해당없음)
- 13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(변경없음)
- 14)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해당없음)
- 15)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변경없음)
- 16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
 - (1) 동의문1재정비촉진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
 - 가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- 나) 정비계획
 - (가)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 - (나) 용도지역계획(변경없음)
 - (다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
 - ① 도로(변경없음)
 - ② 공원(변경없음)
 - ③ 녹지(변경없음)
 - ④ 광장(변경없음)
 - ⑤ 공공청사(변경없음)
 - ⑥ 문화시설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	
기정	①	문화시설	-	신문로2가 6 일원	9,042.5	

• 변경사유 : 문화시설 채납행정청 변경

- ※ 기정) 문화시설(토지 및 시설물)은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되며, 서울특별시장의 조성 및 관리함(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 제3항에 따라 조치할 것)
- 변경) 문화시설 토지는 서울특별시(6,123.6m²)와 종로구(2,918.9m²)로 각각 기부채납되며,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되고 서울특별시장의 조성 및 관리함
- (라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- (마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(변경없음)
- (바)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(사)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(변경없음)
- (아)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변경없음)
- : 본 사업지구 전체는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현황 없음

- (자)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(해당사항 없음)
- (차) 환경성검토결과(변경없음)
- (카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(2) 동의문2재정비촉진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(변경없음)
- (3) 동의문3재정비촉진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(변경없음)

5. 동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

6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: 생략

※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(☎ 02-2133-7218),
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 02-2148-2695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7. 지형도면의 작성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동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

재정비촉진계획 결정(기정)도

범례 (Legend)

- 구역계
- 주거
- 상업업무
- 공공청사
- 공용
- 공공청사
- 도보
- 녹지
- 종교시설
- 공공공차
- 문화시설
- 건축연속선
- 지하철연속선
- 연속선
- 공공공차
- 연속선
- 지하철연속선
- 공공청사
- 지하철연속선

Scale = None

0 50 100 150m